

서울고등법원 2023. 4. 19 선고 2022나2019953 판결 [보증채무금]

재판경과

서울고등법원 2023. 4. 19 선고 2022나2019953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5. 11 선고 2020가합570536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

담당변호사 김기태

피고, 항소인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루

담당변호사 김진영

변론 종결2023. 3. 22.

판결 선고2023. 4. 19.

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5. 11. 선고 2020가합570536 판결

주문

1.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피고는 원고에게 63,110,862원을 지급하라.

2.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.

3. 소송 총비용 중 50%는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98,700,009원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○ 2면 아래에서 7행의 "연 6.8%"를 "연 2.68%"로 고친다.

○ 3면 아래에서 6행의 "제2대출금"을 "제2대출금"으로 고친다.

○ 3면 아래에서 2행의 "나머지"를 "188,006,137원"으로 고친다.

○ 4면 5~6행의 "갑 제1, 8, 9호증, 을 제1, 2, 3, 5, 8 내지 10호증(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"을 "갑 제1호증의 2, 4, 갑 제2호증의 2, 갑 제7, 8, 9호증(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한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, 을 제1, 2, 5, 8호증"으로 고친다.

2. 당사자들의 주장

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4면 9~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 『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624,119,870원을 2021. 12. 10.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충당한 결과 이 사건 제1대출금의 이자 98,700,009원이 남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위 잔존 이자 98,700,00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1) 』

3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제1, 2 대출금 채무 등을 담보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, 이 사건 부동산이 2021. 12. 10. 대금 624,119,870원에 매각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, C에 대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위 624,119,870원이 회생담보권 원금 546,043,200원, 이 사건 제1대출금의 회생채권 원금 10,437,408원, 이 사건 제2대출금의 회생채권 원금 11,280,368원, 회생담보권에 대한 개시 후 이자 22,193,412원, 회생담보권에 대한 연체이자 중 34,165,482원에 순차 충당되어 이 사건 제1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63,110,862원이 남게 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, 11, 12호증,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1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잔존 이자 63,110,86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4.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

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7면 3~1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4항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 『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제1항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을 때에는 회생채권자, 회생담보권자, 주주, 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고 규정하고 있다. 이는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가 그 회생계획의 내용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되는 효력이 있음을 규정한 것이므로,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충당의 방법이나 순서 역시 그 회생계획의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(대법원 2011. 2. 24. 선고 2010다82103 판결 등 참조).

을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① C의 회생계획은 ㉠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

변제충당순서를 원금, 개시 전 이자, 개시 후 이자, 연체 이자 순으로 하되, ㉠ 변제재원의 부족으로 회생계획에 따라 당해 연도 회생채권을 전액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생담보권의 원금, 회생채권의 원금 순으로 당해 연도 변제예정금액을 비례하여 변제하고,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회생담보권의 개시 후 이자, 회생담보권의 연체 이자, 회생채권의 연체 이자 순으로 당해 연도 변제예정금액에 비례하여 변제하고, 당해 연도 변제예정금액 중 미변제분은 다음 연도 변제기일에 우선하여 변제하도록 하며, ㉡ 금융기관 회생채권에 대한 대출과목별 변제충당순서는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별 변제금액 범위 내에서 해당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정한 사실, ㉢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이 회생담보권의 원금 546,043,200원, 이 사건 제1대출금의 회생채권 원금 10,437,408원, 이 사건 제2대출금의 회생채권 원금 11,280,368원, 회생담보권에 대한 개시 후 이자 22,193,412원, 회생담보권에 대한 연체이자 중 34,165,482원에 순차 충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, 을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이 사건 제1대출금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(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회생담보권 546,043,200원, 개시 후 이자 8,145,890원, 연체 이자 69,930,780원으로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, 이는 C의 회생계획에 반하여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, 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제1대출금 중 회생채권으로 시인된 부분의 원금, 이자는 모두 남게 되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1대출금 채무가 모두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).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』

5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,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재판장판사박선영

판사김세종

판사홍지영

1) 원고는 2023. 3. 16.자 준비서면에서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충당 결과 이 사건 제1대출금에 관한 회생담보권의 이자 63,110,862원이 남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취지는 감축하지 아니하였다.